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이천시(2001. 6. 28 제출)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후 자치법규상의 법령상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나.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영 제107조)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 다. 기업용재산으로 “공정이 50페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과 행정재산 보존재산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토록 추가하였음(안 제6조제2항)
- 라. 영 제84조제3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취득·처분의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생략하도록 추가함(안 제64조제3항)
- 마.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을 대부·매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의 3)
- 바.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대부료 및 사용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경감토록 함(안 제22조제9항)

(제48회-자치행정위 제1차)

사. 공유재산의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 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아. 변상금 부과·징수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4. 관련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함

5.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후 자치법규상의 법령상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안제4조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위탁관리 체제를 구체화 하고자 함.

○안제5조 제4항은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1항~3항) 영 제107조에서 동사항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 혜택을 받고 있어 그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O 안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안제6조제2항 제2호 제3호는 법령에서 신설(2000. 10. 20)되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 제3항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
독 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등 법적제한이 없다면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심의에서 생략토록 함.

O 안제19조의 3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은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투자 유치를 한 경우만 적용토록 하였음.

O 안제21조 제4항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는
제1호내지 제4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 제1호내지 제4호 규
정과 중복되어 삭제 하였으며, 동 규정에 연 3%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제5호)의 이자를 정
하였음.

O 안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이
상, 1000분의 25이상, 1000분의 10이상등으로 되어 있어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 있게 하였으며, 공장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여 제8항을 신설한 것
으로 보임.

O 안제22조의 2는 공장건설을 삭제함으로써 투자범위를 확대하는등 자귀
를 수정하였음.

O 안제25조 제2항은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접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
록 하였음.

(제48회-자치행정위 제1차)

- 안제25조의 2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에 전세금 제도를 도입(2000. 10. 20)하여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여 개정하였음.
- 안제26조는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는 내용의 조문 정리를 하였음.
- 안제28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제7항의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하였음.
- 안제28조의 2 변상금의 사전통지등은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를 준용하여 개정 하였음.
- 안제38조 제5항 제3호의 중단의 개정은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으로 명문화 하도록 하였음.
-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후 자치법규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용어정리를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